「출판부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06. 2. 28. 개정 판 (시행 2010. 8. 16.) → 2004. 3. 1. 제정 판 (시행 2002. 9. 1.)

바뀜 13 · 신설 1 · 삭제 1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60/compare?from=640&to=639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후 5:20:07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와 교육 그리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출판물 제작을 위해 설립된 삼육대학교 출판부(이하 "출판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발간 배포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출판부(이하 "출판부"라 한다)를 두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① 출판부는 본 대학 부속기관으로 한다. ② 출판부장은 본 대학의 교직원 가운데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출판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출판부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출판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은 본 대학 인사규정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제2조(기구)** 출판부는 본 대학 부속기관으로 한다. 총장은 출판부를 대표하며, 출판부장은 총장이 위임하는 권한에 의해 출판부 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사업) 출판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대학 교재의 출판 2. 학술도서, 일반도서, 각종 논문집 출판 3.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간행물 출판 4. CD-ROM 제작 출판 5. Web Publishing, e-book 제작 6. 출판도서의 판매 7. 출판위원회 운영 8. 기타 사업	**제3조(사업)** 출판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삼육대학교 교재의 간행 2. 학술 도서, 일반 도서, 각종 논문집 출판 3. 부속 기관 및 부설 연구소 간행물 출판 4. CD-ROM 제작 출판 5. Web Publishing, e-book 6. 출판 도서의 판매 7. 출판위원회 운영 8. 기타 사업
제5조(심의사항) 출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출판도서의 심의 및 심의료 책정에 관한 사항 1. (출판도서의 심의) 출판위원회는 출판이 의뢰된 도서의 심의를 위해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원고심의를 의뢰하고, 심의결과 적합판정이 있을 경우 해당도서의 출판을 허락한다. 2. (심의료) 심의료는 출판의뢰자가 부담한다. ②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출판부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조직)** 1. 출판부장은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교원 가운데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출판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출판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출판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은 본 대학교 인사 규정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제3조(출판위원회) ① 출판부는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들은 출판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제5조(출판위원회)** 1.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교 교직원으로서 7인 이내의 출판위원을 둔다. 2. 출판위원은 출판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출판위원회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제6조(출판물의 책임) 출판도서는 본 대학 연구진흥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저술되어야 하며, 이를 어겨 문제가 발생될 경우 출판물의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심의 사항)** 출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출판 도서의 심의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출판부 규정의 개폐지에 관한 사항 4. 출판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저작권료) 출판부에서 기획하여 출판하는 도서 등에 대하여는 인세.원고료.계약금 등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저작권료)**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도서 등, 원고에 대하여는 인세원고료 계약금 등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 출판부의 운영재정은 학교보조금, 출판부 사업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재정)** 출판부의 운영 재정은 학교보조금, 출판부 사업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연도) 출판부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회계 연도)** 출판부의 회계 연도는 삼육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출판부의 예산과 결산 및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예산회계업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출판부의 예산, 결산 및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예산 회계 업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출판부의 예산 및 결산은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1조(예산결산 및 사업 보고)** 출판부의 예산, 결산 및 사업 보고는 출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해산) 출판부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위원회의 심의 후 대학행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해산)** 출판부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학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재산의 귀속) 출판부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제13조(재산의 귀속)** 출판부가 해산될 경우에는 그 재산은 삼육대학교에 귀속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시행세칙) 출판부장은 출판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출판부 운영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14조(시행세칙)** 출판부장은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출판 규정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